중국 FDI 확대와 드러나고 있는 비즈니스 리스크

2005. 2.

동 북 아 팀

목 차

1.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1

가. 현황 / 1
나. 주요국별 투자 현황 /3
다. 업종별 투자 현황 /6
라. 지역별 투자 현황 /8

2. 한국의 중국 투자 현황 /11

가. 현황 /11
나. 업종별 /14
다. 지역별 /16

3.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21

가. 예측불허의 전력난 /22
나. 개발구 정리정돈 정책,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 /25
다. 불투명한 세제 리스크 /33
라. 법률 운용상 문제 /40
마. 대금회수 지연 심각화 /44

4.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49

【자료 요약】

1.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 현 황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0년을 정점으로 2003년 말 현재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와 달리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4년 한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승인 기준으로 4만 3,664건, 계약금액 1,534억 7900만달러, 실제 투자금액이 606억 3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3%, 33.4%, 13.3% 증가함

- 2004년 10월 말 현재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500,479개사(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 계약금액 1조 621억 2900만달러(동 17.1% 증가), 실제 투자금액이 5,552억 5100만달러(동 13.7% 증가)를 기록함

□ 국별 중국 투자 비중

국가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1~10월)
홍 콩	38.0	35.7	33.8	33.1	31.4
버진군도	9.3	0.7	11.6	10.7	11.5
미 국	10.8	9.5	7.8	10.3	6.9
일 본	7.1	9.3	7.9	9.4	8.8
대 만	5.6	6.4	7.5	6.3	5.3

□ 업종별 투자 현황

- 제조업이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70%로 대종을 이루고 있음

- 서비스·무역영역부문의 신설기업 비중은 2002년 23.6%에서 2003년 24.8%로 상승

- 한편, 중국의 WTO 가입 직전인 2001년에 비해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 1차 산업 분야의 투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호텔, 금융업, 보험업, 과학기술 및 종합기술서비스업 등 2, 3차 산업비중이 점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별 투자 현황

- 상하이, 장쑤, 저쟝 등 장강 삼각주 지역에 대한 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40%를 차지,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함을 보여줌

- 그 다음이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 등 환발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으며, 광둥, 푸젠, 하이난 등 주강삼각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 한국의 중국 투자현황

□ 현황

- 2004년 한해 대중국 실제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43.8% 증가한 21억 5700만달러를 기록하여 2002년 이후 연 3년간 우리의 제1 투자대상국으로 정착함

- 2004년 말 현재 대중국 투자는 총 11,331건, 실제 투자금액은 105억 5200만달러를 기록함

□ 업종별

- 20024년 말 현재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 85.8%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임
  . 제조업종에서도 전자통신장비, 섬유의복, 석유화학 업종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

- 반면,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11.0%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WTO 가입 전후를 비교할 때 확실히 WTO 가입 후에 서비스 투자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별

- 2004년 말 현재 우리기업은 산둥성 지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이 장쑤성, 베이징시, 텐진시, 랴오닝성, 상하이 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

- 한편, 권역별로 보면 산둥성, 베이징시가 포함된 환발해지역이 우리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상하이, 장쑤, 저장 등 장강삼각주지역은 중국의 WTO 가입 직전 2001년에 전체 투자의 26.3%를 차지. 2002년 31.2%, 2003년 36.8%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04년 28.1%로 소폭 하락함

.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실제투자금액은 2001년(전년대비 34.9%), 2002년(동 96.4%), 2003년(동 81.5%), 2004년(29.2%)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지린, 헤이롱장, 랴오닝 등 동북 3성 지역은 10% 대의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음

3.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전력난 현황

-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전력 수요의 신장세도 현저하여 소비전력량은 1996년~2002년 간 중국 실질성장률을 넘어선 연 9~15%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3년 여름부터 본격화된 전력난으로 중국 현지 진출기업은 휴일 대체나 야간 조업을 하는 등 중국의 전력공급 조정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았음

- 상하이 전력공사는 2005년의 전력수급은 2004년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한 중국 인민은행도 전력수요 지속 증가로 인해 전력부족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개발구 정리정돈 정책

- 2003년 중국 정부는 무단 설립 개발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계기로 2004년 본격적으로 토지시장 정리정돈 정책을 실시

- 이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개발구 조성을 위해 농지를 마음대로 공업용지로 전용하는 불법적 행태에 대한 중앙정부가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됨

- 향후 불법 조성 개발구 입주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관련법 이해 필요

□ 불투명한 세제 리스크

- 증치세 불환급액 산출방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 수출증치세의 환급제도는 중국의 경제정세, 환급재원, 수출정책, 징세관리 등으로 수시 변경되어 외자계기업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수출증치세의 불환급세율(평균 3%)의 산출방식으로 수출기업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즉, 수출판매가격(FOB가격)에 불환급율을 곱하는 계산식으로 인해 매입세액과 자사에 의한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불환급분이 발생하는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즉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부담이 큼

- 유통기업의 소규모 납세자 기준 문제점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긴급통지를 발표, 특정규모 이하의 유통기업에 대해 1년간 매출액이 180만위앤에 달할때까지 소규모 납세자로 인정하기로 결정

.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관한 증치세율은 4%로 일반 납세자(17%)보다 낮지만 매출액에 따른 증치세의 전용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매입 증치세 공제가 불가능함. 결국 기업이 매입 증치세액을 직접 비용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전가격조사

. 중국 세무총국은 최근 '이전가격에 관한 통지'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향후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됨

. 조사대상기업은 관련기업과의 거래규모가 큰 경우, 설립후 2~3년이 지나서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 이익발생 미미함·손실 등의 이유로 증자를 통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 등임

□ 법률 운용상 문제

- 중국 정부는 WTO 가입 이후 각종 법제도를 급속도로 정비하고 있지만 그 운영 및 행정상의 처리 미숙함으로 인해 중국 진출 외자계기업 대부분이 법 적용에 있어 난관에 부닥치고 있음

- 이는 '실시세칙' 등 구체적인 법안 제정 지연과 지방정부의 법령 운용이 자의적인 부분 등 투명성과 통일성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

4.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전력난 발생 대비를 위한 사전 대응책 강구 요망

□ 개발구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 중국 세제관련 정확한 정보 입수 요망

□ 법제도 파악을 통한 리스크 방지

□ 대금회수지연 발생 사전 대응책 마련 필요

1.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가. 현　황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2년도 전년 대비 152.1%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이래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를 입은 1999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0년을 정점으로 2003년 말 현재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2001년부터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 중국의 FDI 점유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2003년에는 9.6%까지 이르렀음

□ 2004년 한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승인 기준으로 4만 3,664건, 계약금액 1,534억 7900만달러, 실제 투자금액이 606억 3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3%, 33.4%, 13.3% 증가함

□ 2004년 10월 말 현재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500,479개사(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 계약금액은 1조 621억 2900만달러(동 17.1% 증가), 실제 투자금액이 5,552억 5100만달러(동 13.7% 증가)를 기록함

<전 세계 FDI 및 중국의 FDI 현황 비교>

(단위 : 억 달러, %)

연도	전 세계 FDI 금액	증감율	중국의 FDI	증감율	전 세계 FDI 중 중국의 FDI 점유율
1991	1981	-	43.7	25.2	2.2
1992	2015	1.7	110.1	152.1	5.5
1993	2391	18.7	275.2	22.7	13.4
1994	2511	5.0	337.67	22.7	13.5
1995	3387	34.9	375.21	11.1	11.1
1996	3590	6.0	417.26	11.2	11.6
1997	4640	29.2	452.27	8.4	9.7
1998	6909	48.9	454.63	0.5	6.6
1999	10867	57.3	403.19	-11.3	3.7
2000	13879	27.7	407.15	1.0	2.9
2001	8176	-41.1	468.78	15.1	5.7
2002	6788	-17.0	527.43	12.5	7.8
2003	5596	-17.6	535.05	1.4	9.6
2004	-	-	606.30	13.3	-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년

주 : 2004년은 1~10월간 통계치임

<전 세계 FDI 중 중국의 점유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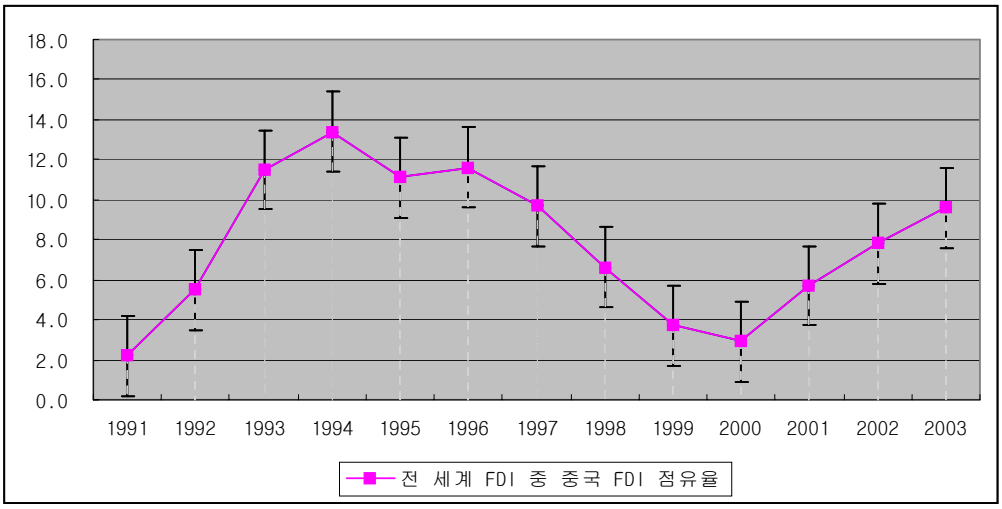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년

나. 주요국별 투자현황

□ 홍콩

- 2004년 1~10월 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홍콩이 중국 전체의 31.4%를 차지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줄곧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5개년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홍콩의 점유율은 2000년(38.0%)→2001년(35.7%)→2002년(33.8%)→2003년(33.1%)→2004년 1~10월(31.4%)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버진군도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버진군도의 점유비중은 2000년(9.3%)→2001년(10.7%)→2002년(11.6%)→2003년(10.7%)→2004년 1~10월(11.5%) 등 10%대를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2004년 현재까지 버진군도는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제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

- 한편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동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은 케이만군도와 함께 조세피난처(Tax haven)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임

. 실제 이 지역의 투자액의 많은 부분이 대만의 투자액이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음[1)]

□ 미국

- 2000년에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중 10.8%를 차지한 미국은 중국의 제2위의 외국인 투자국으로 자리를 유지했으나 2003년에는 7.8%, 2004년에

1) 일본 JETRO의 中國經濟(2002. 3월호)

는 6.9%로 감소하여 연이어 제5위에 그쳤음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미국의 비중
  . 2000년(10.8%)→2001년(9.5%)→2002년(7.8%)→2003년(10.3%)→2004년 1～10월(6.9%)

□ 일본

- 2000년에 대중 투자금액이 약 30억달러에 그쳤던 일본은 2001년부터 대중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한 40～50억달러대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일본의 비중
  . 2000년(7.1%)→2001년(9.3%)→2002년(7.9%)→2003년(9.4%)→2004년 1～10월(8.8%)

□ 대만

-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큰 변동폭 없이 20～30억 달러를 유지하여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줄곧 5～6위권에 머물러 있음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대만의 비중
  . 2000년(5.6%)→2001년(6.4%)→2002년(7.5%)→2003년(6.3%)→2004년 1～10월(5.3%)

-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버진제도와 케이만군도의 외국인투자의 상당부분이 대만기업의 투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제 대만기업의 투자액은 상무부 중국 집계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주요국의 연도별 중국 투자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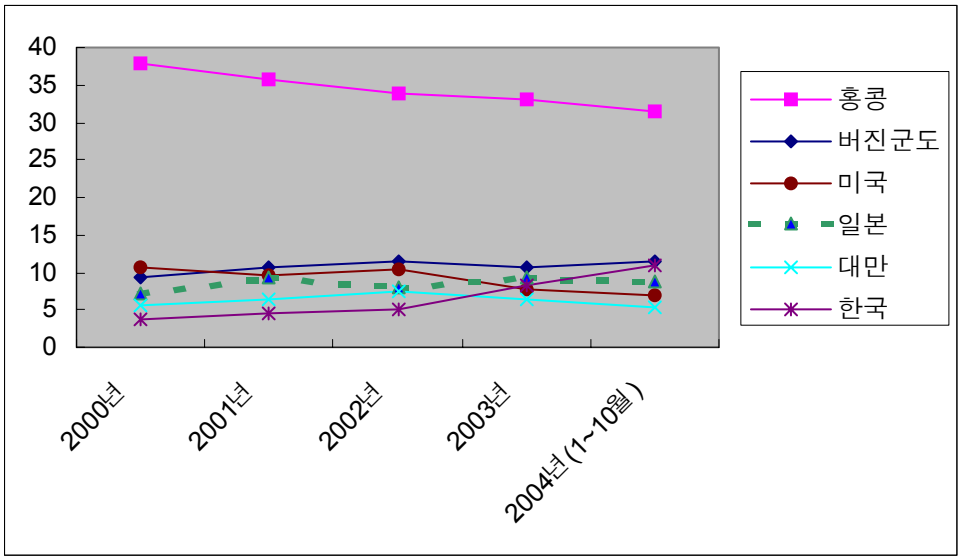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및 상무부 통계에서 정리

<국가별 중국 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1~10월)	
	국가	투자 금액	국가	투자 금액	국가	투자 금액	국가	투자 금액	국가	투자 금액
	전체	407.72	전체	468.78	전체	527.43	전체	535.05	전체	537.81
1	홍콩	155.0	홍콩	167.17	홍콩	178.61	홍콩	177.00	홍콩	168.78
2	미국	43.83	버진 군도	50	버진 군도	61.17	버진 제도	57.77	버진 군도	61.91
3	버진 군도	38.32	미국	44.33	미국	54.24	일본	50.54	한국	58.67
4	일본	29.15	일본	43.48	일본	41.90	한국	44.89	일본	47.15
5	대만	22.96	대만	29.8	대만	39.71	미국	41.99	미국	36.98
6	한국	14.89	한국	21.52	한국	27.21	대만	33.77	대만	28.19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및 상무부 통계

다. 업종별 투자 현황

□ 2003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총 투자의 70%로 대종을 이루고 있음.

- 이 중 자동차관련 교통운수설비제조업과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서비스·무역영역부문의 신설기업은 10,179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하여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 중 점유비율이 2002년 23.6%에서 2003년 24.8%로 상승함

□ 한편, 중국의 WTO 가입 직전인 2001년에 비해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 1차 산업 분야의 투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호텔, 금융업, 보험업, 과학기술 및 종합기술서비스업 등 2, 3차 산업비중이 점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WTO 가입 후 중국의 제조업, 금융, 서비스부문의 대외업종 개방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향후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증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02년 4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개정에 따라 장려업종이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됐으며, 제한업종은 기존 112개에서 75개로 감소됐음

. 이외에 이전에 금지업종에 속했던 통신, 연료, 열에너지, 도시 배·하수구, 상수도 공급, 금융 등 업종을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조건을 구비한 외국기업의 진입을 허가한 것도 외자계 기업의 유인 요인으로 작용함

. 또 이전에 외자 점유 비율을 제한했던 일부 업종을 외자가 지배지분 또는 100% 지분을 갖는 것을 허가함

- 그러나, 2004년 11월 30일 재개정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는 장려업종이 2002년 4월 개정시보다 5개나 줄어들어 향후 외자도입 장려 프로젝트 선정은 한층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됨

<최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개정 방향>

① 첨단기술 도입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즉 첨단기술 유치 효과가 없는 단순가공 등 저부가가치 업종은 투자를 제한함
② 외자 참여범위 확대,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속도 가속화
→ TV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영화제작부문을 대외개방영역에 포함시킴(단, 중국측이 다수 지분 보유 의무화)
③ 한편, 과잉투자업종은 장려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전환함

<2002～2003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업종별 현황>

(단위: 억 위앤, %)

업 종	2001년		2002년		2003년	
	투자 금액	비중	투자 금액	비중	투자 금액	비중
총 계	468.78	100	527.43	100	535.04	100
농,임.목,어업	8.99	1.92	10.28	1.95	10.01	1.87
채굴업	8.11	1.73	5.81	1.10	3.36	0.63
제조업	309.07	65.93	368.00	69.77	374.67	70.02
전력,연료 및 용수 생산 공급	22.73	4.85	13.75	2.61	12.95	2.42
건축업	8.07	1.72	7.09	1.34	6.12	1.14
교통운수,창고, 우편업	9.09	1.94	9.13	1.73	8.67	1.62
도소매업, 호텔업	11.69	2.49	9.33	1.77	15.99	2.98
금융업, 보험업	0.35	0.08	1.07	0.20	2.32	0.43
부동산업	51.37	10.96	56.63	10.74	52.36	9.79
주민서비스· 기타서비스업	25.95	5.54	29.43	5.58	31.61	5.91
위생,사회보장, 사회복리업	1.19	0.25	1.28	0.24	1.27	0.23
교육, 문화예술	0.36	0.08	0.38	0.07	0.58	0.11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 서비스업	1.20	0.26	1.98	0.37	2.76	0.52

자료원 : 중국대외무역경제연감(2002/2003년판)

라. 지역별 투자 현황

□ 2003년 중국의 각 성시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쟝(浙江) 등 장강삼각주 지역에 대한 투자가 총 외국인 직접투자의 40%를 차지하여 이 지역이 외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2002년 대비 6.02%p 증가한 것으로 특히 WTO 가입 직전 2001년과 비교할 때 2003년에는 7.5%p 증가하여 WTO 가입 후 외국기업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이는 중국이 WTO 가입 전후 '대외업종 개방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각종 법령의 제·개정 등 법제화, '내수시장 진입환경 용이' 등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향후 중국 시장 개척을 겨냥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03년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등 환발해지역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중 20.1%를 차지하여 제2위를 기록함

- 이는 또 2002년 대비 3.28%p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도 장강삼각주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함

□ 한편, 중국의 개혁 개방초기부터 외자계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광둥(廣東),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등 주강삼각주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2002년에 29.74%였던 것이 2003년에는 20.27%로 무릇 9%p가 감소

- 이는 중국의 WTO 가입이후 중국의 내수시장 잠재력이 큰 장강삼각주, 환발해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진 반면, 단순 임가공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동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 명분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2001년～2003년 각 성시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억위앤, %)

성시명	2001		2002		2003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총계	468.77	100	527.43	100	535.04	100
베이징시	**17.68**	**3.77**	**17.25**	**3.27**	**21.91**	**4.10**
톈진시	21.33	4.55	15.82	3.00	15.34	2.87
허베이성	6.69	1.43	7.83	1.48	9.64	1.80
산시성	2.34	0.50	2.12	0.40	2.13	0.40
내이멍구	1.07	0.23	1.77	0.34	0.89	0.17
랴오닝성	25.16	5.37	34.12	6.47	28.24	5.28
지린성	3.37	0.72	2.45	0.46	1.90	0.36
헤이롱쟝	3.41	0.73	3.55	0.67	3.22	0.60
상하이시	**42.92**	**9.15**	**42.72**	**8.10**	**54.68**	**10.22**
장쑤성	**69.15**	**14.75**	**101.89**	**19.32**	**105.64**	**19.74**
저쟝성	**22.11**	**4.72**	**30.76**	**5.83**	**49.81**	**9.31**
안후이성	3.37	0.72	3.84	0.73	3.67	0.69
푸젠성	39.18	8.36	38.38	7.28	25.99	4.86
쟝시성	3.95	0.84	10.82	2.05	16.12	3.01
산둥성	**35.20**	**7.51**	**47.34**	**8.98**	**60.16**	**11.24**
허난성	4.57	0.98	4.05	0.77	5.39	1.10
후베이성	11.88	2.54	14.27	2.70	15.69	2.93
후난성	8.10	1.73	9.00	1.71	10.18	1.90
광둥성	119.32	25.45	113.34	21.49	78.23	14.62
광시자치구	3.84	0.82	4.17	0.79	21.29	3.98
하이난성	4.66	1.00	5.12	0.97	4.21	0.79
충칭시	2.56	0.55	1.96	0.37	2.60	0.49
쓰촨성	5.81	1.24	5.56	1.05	4.12	0.77
구이저우성	0.28	0.06	0.38	0.07	0.45	0.08
윈난성	0.64	0.14	1.16	0.21	0.83	0.16
시장자치구	-	-	-	-	-	0.00
샨시성	3.51	0.75	3.60	0.68	3.19	0.62
간쑤성	0.74	0.16	0.61	0.12	0.23	0.04
칭하이성	0.36	0.08	0.47	0.09	0.25	0.05
닝샤자치구	0.16	0.04	0.22	0.04	0.17	0.03
신쟝자치구	0.20	0.04	0.19	0.04	0.15	0.03

자료원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2002/2003년판)

주)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금액을 말함

2. 한국의 중국 투자현황

가. 현황

□ 1988년 최초 중국에 진출한 한국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확대 실시와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을 기점으로 중국 투자가 본격화됨

- 이에 따라 1993년에는 실제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86.8%가 증가함

□ 이러한 증가세는 1996년까지 지속되다가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한 1997년을 기점으로 1999년까지 감소세로 이어짐. 그러나 2000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 및 한국 경제 회복 등 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90.7%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임

□ 이와 같은 증가 추이는 중국의 WTO 가입해인 2001년에는 중국 투자에 대한 관망세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중국의 WTO 가입 직후 2002년에는 계약액, 실제투자금액 모두 107.3%, 64.3%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WTO 가입 효과에 따른 기대감으로 중국 진출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함

- 이에 따라 2002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제1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여 2004년 말 현재까지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2003년에도 실제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53.8% 증가하는 등 대중국 투자가 전년도에 이어 신장세를 유지했는데 특히 2003년 우리기업의 대중국 실제 투자금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초과한 14억 7800만달러를 기록함

□ 2004년 한해 실제 투자금액도 전년동기 대비 43.8% 증가한 21억 5700만달러를 기록함

- 한편, 중국 상무부가 집계한 2004년(1～10월)의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약 60억달러를 차지하여 지난해 4위에서 중국의 제3대 투자국으로 부상했으나[2], 한국 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중투자

금액은 16억여 달러에 그치고 있음

. 이와 같이 양국간의 통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중국진출 기투자기업이 투자법인 영업이익 등으로 중국내 재투자한 경우, 국내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중국통계에는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과 ▲ 이외에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한 국내 송금이나 신청절차 없이 중국에 투자한 경우 등이 그 요인으로 들 수 있음

□ 2004년 말 현재 대중 투자는 총 11,331건으로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으며, 실제투자금액도 105억 52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한국의 연도별 대중 투자 현황>

(단위 : 건/천달러)

연도	신고		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8	2	3,400	1	10
1989	12	9,770	7	6,360
1990	39	55,624	24	16,174
1991	112	84,722	69	42,469
1992	269	223,113	170	141,127
1993	631	631,281	381	263,682
1994	1,065	825,078	841	633,896
1995	884	1,280,585	751	841,647
1996	926	1,999,941	734	906,452
1997	750	915,221	631	727,709
1998	318	901,839	261	685,313
1999	554	489,424	460	353,318
2000	911	970,203	772	675,412
2001	1,127	997,637	1,036	592,192
2002	1,551	2,075,772	1,366	984,744
2003	1,838	2,742,444	1,671	1,500,185
2004	2,233	3,633,682	2,149	2,157,426
총계	13,223	17,867,832	11,331	10,552,94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2) 제1위와 2위를 차지한 홍콩과 버진군도의 특수한 상황(홍콩은 대중국 투자를 위한 우회투자 기지, 버진군도는 제3국이 조세회피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국가 순위를 따져 보면 한국이 명실상부한 중국의 중요 외국인 직접투자국이라 할 수 있음

<최근 5년 간 한국의 대중 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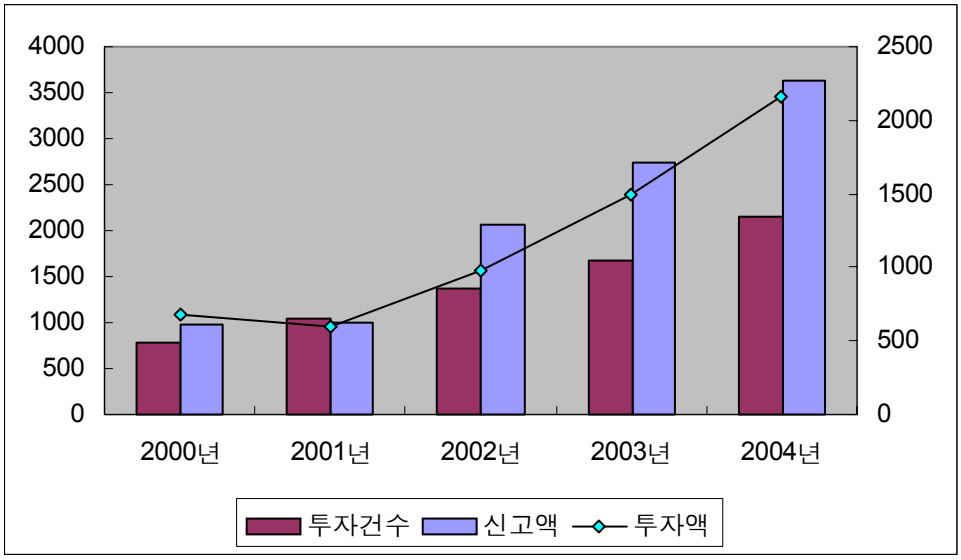

자료 : 상동

<최근 5년 간 대중 투자액 증감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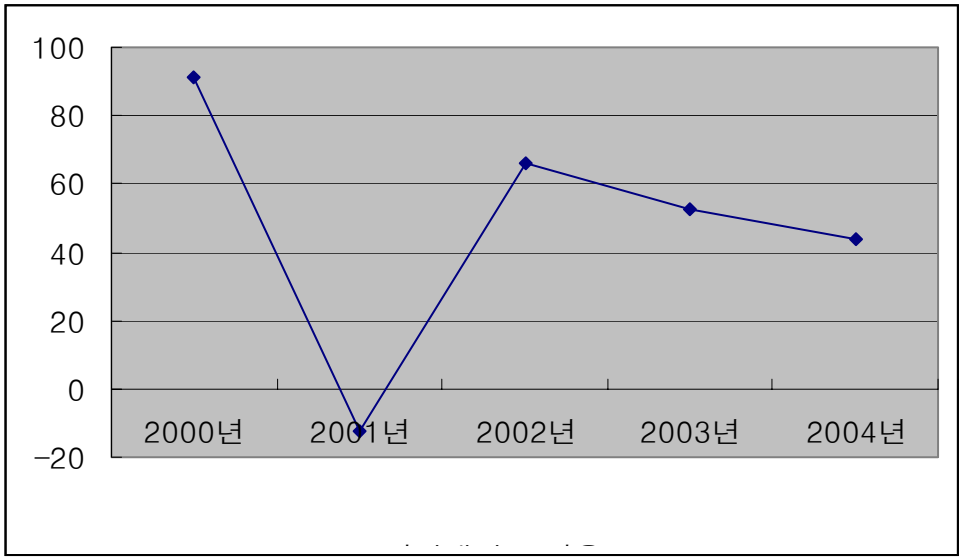

자료 : 상동

주) 실제투자금액을 기준치로 전년 대비 증감율을 나타낸 것임

나. 업종별

□ 2004년 12월 말 현재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총 투자의 85.8%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중국 투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제조업종에서도 전자통신장비, 섬유의복, 석유화학 업종 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

- 제조업종별 투자 비중(실제투자금액 기준, 큰 비중순)
  . 전자통신장비(25.1%)→섬유의복(12.4%)→석유화학(10.8%)→수송기계(10.5%)→기계장비(8.7%)→비금속광물(6.8%)→1차금속(6.4%)→기타(5.6%)→음식료품(4.4%)→신발가죽(3.7%)→조립금속(3.3%)→종이인쇄(1.4%)→목재가구(1.0%)

<제조업종의 투자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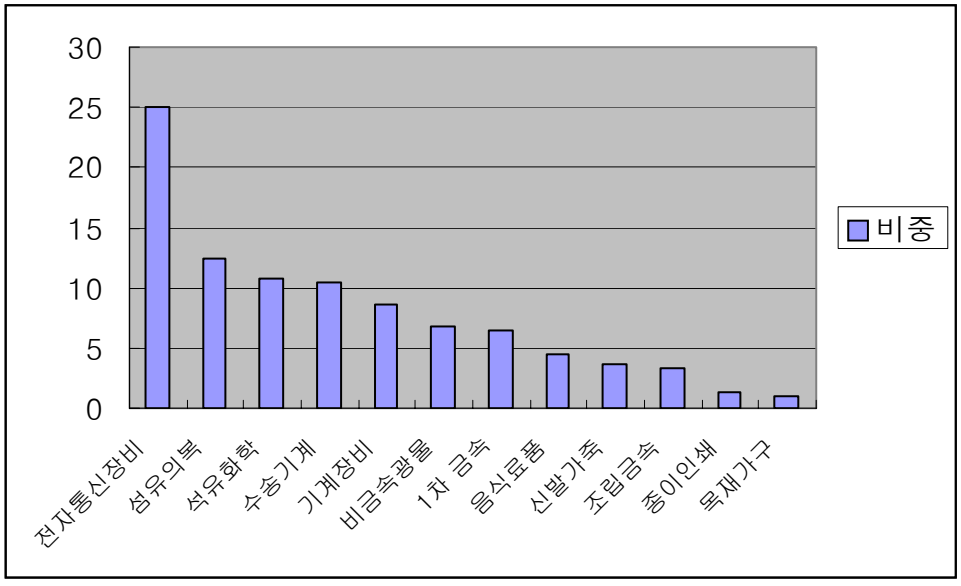

자료 : 상동

□ 반면,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11.0%에 그침.

□ 그러나 WTO 가입 전후를 비교하면 확실히 WTO 가입 후에 서비스 투자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도별 서비스 부문 투자비중>

연도	2001	2002	2003	2004
비중(%)	6.7	7.7	9.8	8.1

자료 : 상동

주) 상기 서비스업부문에는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통신업,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됨

주) 실제투자금액기준

<서비스부문 투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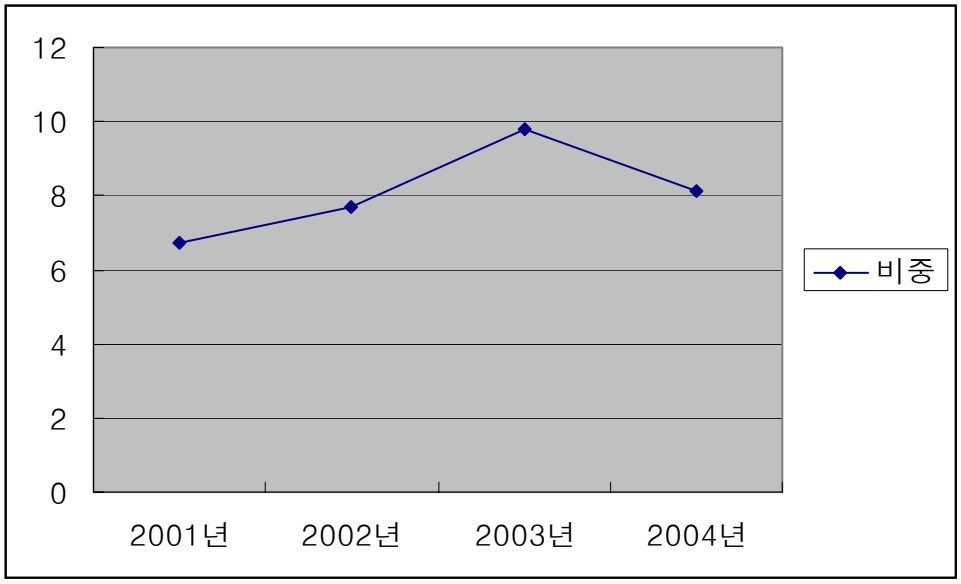

자료 : 상동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천달러)

업종	신고		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림어업	207	117,673	167	49,252
광업	64	64,480	48	24,940
제조업	11,183	15,020,825	9,589	9,057,126
건설업	113	439,460	86	257,232
도소매업	516	498,748	439	304,479
운수창고업	64	142,097	56	72,563
통신업	28	182,120	25	102,911
금융보험업	2	1,210	2	928
숙박음식점업	351	568,423	302	278,091
서비스업	649	476,262	574	200,166
부동산	45	352,134	42	203,815
기타	1	4,400	1	1,437
총계	13,223	17,867,832	11,331	10,552,94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주) 통계는 2004년 말 현재 기준

다. 지역별

□ 2004년 12월 말 현재, 우리 기업은 중국 산둥성 지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국 투자 중 산동성의 점유율

. 건수(대중국 투자의 35.6%), 금액(대중국 투자의 27.8%)

- 이는 외국기업이 주로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등 장강삼각주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 산둥성 진출이 활발한 것은 산둥성이 전통적으로 한국과 거리가 가깝고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다는 것과 또한 1988년 최초로 랴오닝성, 산둥성 투자사절단의 방한으로 일찌감치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를 환기시켰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음

- 특히 산둥성의 칭다오시, 옌타이시에는 우리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 다음이 장쑤성, 베이징시, 톈진시, 랴오닝성, 상하이시 등 순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쑤성(총투자액의 16.7%)
- 톈진시(총투자액의 10.2%)
- 랴오닝성(총투자액의 8.9%)
- 상하이시(총투자액의 7.0%)

□ 한편, 권역별로 보면 산둥성, 베이징시가 포함된 환발해지역이 우리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나타남

-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도소매업 등 소비 인프라 면에서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기존 수출목적의 우리 기업의 투자를 내수형으로 전환하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상하이, 장쑤, 저장 등 장강삼각주지역은 중국의 WTO 가입 직전 2001년에는 중국투자 중 26.3%를 차지했지만 2002년에는 31.2%, 2003년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어 36.8%를 기록했으며 2004년에는 28.1%로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실제 2001년 이후 실제투자금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1년(34.9%), 2002년(96.4%), 2003년(81.5%), 2004년(29.2%)를 나타내고 있음

. 환발해지역 다음으로 이 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수출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장 개척 대상지로서 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는 중국의 내수시장의 빗장을 열기 시작한 2002년에, 동 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96.4%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점을 봐도 알 수 있음

- 특히 중국정부가 2004년 6월 1일 부로 소매유통업 개방 확대에 관한 '외국인투자 유통부문관리방법'의 시행에 들어가면서 향후 이 지역은 중국의 소매시장 진출을 노리는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지린(吉林), 헤이롱쟝(黑龍江), 랴오닝(遼寧) 등 동북 3성 지역은 2001년(10.7%), 2002년(8.0%), 2003년(8.3%)에서 2004년(12.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이 지역은 동북진흥계획[3]에 따른 외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광둥(廣東),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등 주강삼각주지역은 중국의 WTO 가입 직전인 2001년(3.1%), 2002년(6.2%), 2003년(3.8%), 2004년(4.7%)로 5% 이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주강삼각주 지역은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정책이 가장 먼저 실시된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홍콩, 대만 등 화교자본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우리기업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임

□ 2001년도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 쟝시(江西) 등 장강중류지역에 대한 투자는 중국 투자의 4.6%를 차지했으나 WTO 가입 후 그 점유율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동 지역은 2억 3000만명에 달하는 거대인구의 시장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중국정부가 중국 내륙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집중육성할 계획이어서 내륙지역중에서 가장 우수한 투자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점차 우리기업들도 중국 연해지역에 몰려 있는 투자행태에서 벗어나 점차 방대한 내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 내륙시장으로의 관

3) '동북진흥계획'은 2002년 제16차 당공산당 대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2003년 8월 온쟈바오(溫家寶)총리가 참석한 지린성 창춘 회의에서 공식 통과됨. 이 계획은 중국 정부가 서부대개발 정책 이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동북지역을 국가의 신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임. 즉, 상하이 중심의 장강삼각주와 선전중심의 주강삼각주, 베이징, 톈진 지역의 환발해권 경제권에 이어 중국경제의 제4의 축으로 성장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심을 돌릴 필요가 있음

□ 기타, 쓰촨(四川), 산시(山西), 샨시(陝西), 간쑤(甘肅) 등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1% 미만의 극소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 건/천 달러)

지역명	신고		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산둥성	4,569	4,809,767	4,038	2,939,502
랴오닝성	2,098	1,697,707	1,685	935,032
톈진시	1,136	1,629,433	1,000	1,081,091
장쑤성	960	3,381,919	852	1,762,158
지린성	975	458,480	743	236,778
베이징시	864	1,719,517	756	1,110,469
상하이시	641	1,118,000	596	736,662
저쟝성	407	741,839	368	470,843
광둥성	386	663,469	335	408,467
헤이롱쟝성	401	336,658	309	189,784
허베이성	303	247,556	253	133,173
푸젠성	104	98,106	84	66,885
쓰촨성	60	73,888	53	50,503
자치구	45	392,724	34	121,929
안후이성	41	70,473	31	28,406
쟝시성	41	25,261	34	20,038
허난성	43	16,917	33	9,820
후베이성	37	56,644	28	36,967
후난성	24	207,595	24	162,435
산시성	25	28,037	20	8,149
하이난성	18	64,957	16	24,791
샨시성	16	11,645	14	7,684
윈난성	14	7,711	13	4,331
간쑤성	7	1,892	6	728
구이저우성	7	7,506	5	6,194
칭하이성	1	121	1	121
총계	13,223	17,867,832	11,331	10,552,94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주) 2004년 12월 말 현재

<권역별 투자 비중>

(단위 : %)

지　　역	2001	2002	2003	2004
환발해지역	53.1	51.7	45.6	49.9
장강삼각주	26.3	31.2	36.8	28.1
동북3성	10.7	8.0	8.3	12.9
주강삼각주	3.1	6.2	3.8	4.7
장강중류지역	4.6	1.9	2.9	2.3
중서부지역 및 기타	0.5	0.9	1.4	0.8

자료원 : 상동

주) 1. 환발해지역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을 포함
2. 장강삼각주는 상하이, 장쑤성, 저쟝성 등을 포함
3. 동북 3성은 지린, 헤이롱쟝, 랴오닝성 등을 포함
4. 주장삼각주는 광둥, 푸젠, 하이난 등을 포함
5. 장강중류지역은 후난, 후베이, 안후이, 쟝시를 포함
6. 중서부지역 및 기타는 쓰촨, 산시, 샨시, 윈난, 간쑤, 구이저우, 칭하이, 허난 등을 포함
7. 비중은 전체 실제투자금액중 점유율을 의미

<권역별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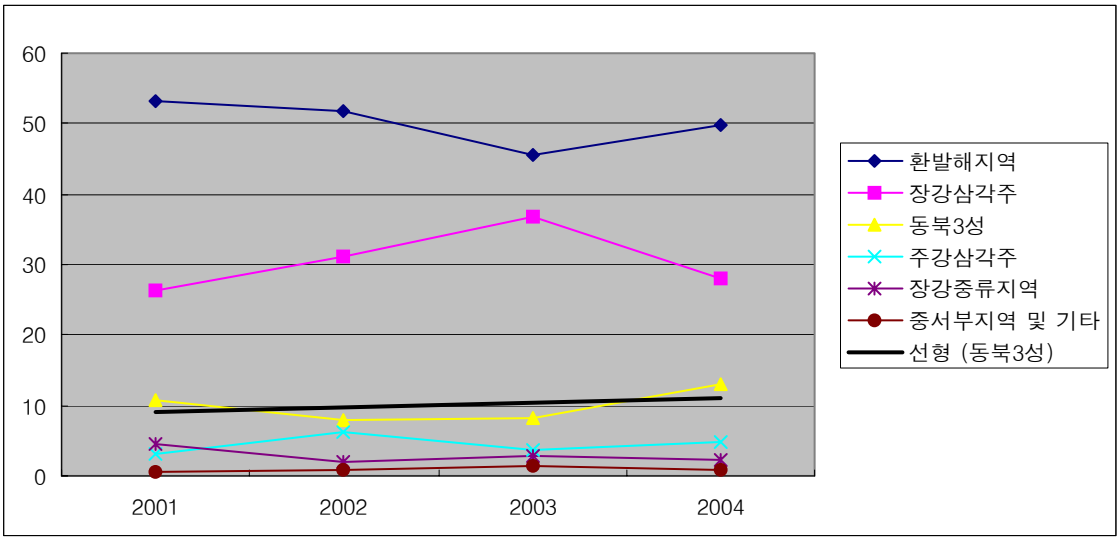

자료원 : 상동

3.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중국의 외자도입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의 표면화

-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지금까지 우리기업을 포함한 외자계기업들은 중국의 저렴한 지가, 저가의 풍부한 노동력, 방대한 자원, 단기간 공장건설, 정비된 인프라, 조세우대, 외자우대 정책 등 이점을 높게 평가하여 중국 투자를 검토해 왔음

- 그러나 2003년 중국에서의 사스 발발이나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전력난, 개발구 정리 정책 등을 계기로 중국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점차 수면위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기존의 잣대만을 가지고 중국 진출을 결정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자원부족 현상은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과 또 지방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조성했던 개발구에 대한 단속이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또 세계 제1위의 FDI 도입국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내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일부 외자도입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자계기업을 선별 유치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도 리스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문제점 검토 및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 전력부족, 개발구 정리, 불투명한 세제 등 향후 투자환경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전략적 투자계획 수립이 요구됨

. 이는 중국의 생산거점이 기업 그룹 전체의 글로벌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또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상의 안정성 여부가 모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지금까지 중국 진출기업은 중국의 외자정책 변동이나 부당한 정책 시행에 대해 주로 관계당국에 대한 개별적인 로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향후 문제의 복잡성과 확대에 따라 기업의 단독 로비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진출기업의 연대 활동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음

가. 예측불허의 전력난

□ 전력난 현황

- 중국 경제는 1996년 이후 연 평균 실질성장률 8% 이상을 달성하는 등 급성장을 보였으며 세계 경제가 불황을 보인 2001년, 2002년에도 각각 7.3%, 8.0%로 매우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여 중국 경제의 건실함을 대내적으로 나타냈음

.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전력 수요의 신장세도 현저하여 소비전력량은 1996년~2002년간 중국의 실질성장률을 넘어선 연 9~15%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전력난은 2003년 여름부터 본격화됨. 이로 인해 중국 현지 진출기업도 휴일 대체나 야간 조업을 하는 등 중국의 전력공급 조정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음

. 2003년 전력수요는 1조 8,910억㎾로 전년대비 1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004년 1/4분기 중국의 전력사용량은 4,800억㎾로 전년동기 대비 16.4% 증가함. 특히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롱쟝성, 신쟝성, 하이난성 등 기타 성급 전력망은 모두 제한 송전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은 2003년보다 더욱 악화됨. 이에 따라 제한 송전지역이 2003년 22개성에서 2004년에는 24개로 확대됐음

. 상하이 전력공사에 따르면 2005년의 전력수급 부족문제는 2004년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

. 즉, 상하이시의 2005년 여름의 전력 최고부하는 2004년 여름 사용 전력량을 220만㎾ 상회하는 1,880만㎾에 달하고 전력부족량은 2004년 여름을 초과하는 420만㎾에 달할 것으로 보임. 때문에 2005년 여름에도 전력 다소비형 산업 등 최대 1만 개사를 대상으로 전력공급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 함

<전력공급 조정 실시 지역(2003년, 2004년)>

華北	河北, 山西, 內蒙古, 山東*
華東	上海市, 江蘇, 浙江, 安徽, 福建
華中	江西, 河南, 湖北, 湖南, 四川, 重慶市
西北	甘肅, 青海, 寧夏, 陝西
南方	廣東, 廣西, 貴州, 雲南, 海南

자료원 : 중국전력기업연합회 발표 자료
주 : * 2004년도에만 실시, 지역의 칭호는 전력송전계통의 지역 분포에 따름

□ 전력난 발생 주요 원인

- 중국 정부는 전력 수급차의 발생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1990년대 후반기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부터 수년 간 일시적인 전력 공급 과잉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기간 동안 발전소 설비 건설 계획을 보류했기 때문

. 또 공급 과잉시의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장려했던 전력 다소비형 산업이 최근 호황을 보임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속도록 증가했기 때문임

. 또한 중공업 분야의 전력소모량이 막대한데, 특히 전해알루미늄, 철강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이 전력공급의 부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 일부 전력망, 발전소의 투자가 지체돼 설비 증설 시기를 놓친 것도 전력부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에어컨 등 민생용 수요 증가도 전력부족난에 일조함

. '중국전력감독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이상고온, 이상갈수(渴水)라는 날씨요인에 따라 수력발전소의 가동률이 저하됐던 것도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일본의 에너지 문제 전문가들은 상기 중국 정부의 발표 이외에 ▲ 석탄 가격 상승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 전력산업과 석탄산업과의 이해조정에 실패한 중국정부의 지도력 부족 문제 ▲ 발전소와 송전망 분리 등 일련의 전력행정 재편 정책에 '공백'이 생긴 점을 지적하고 있음

□ 향후 전력 수급 전망 및 과제

- 중국 전역의 수급 전망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상하이 전력공사' 예측과 달리 "2005년에는 기본적으로 수급부족의 상황이 완화 상태에 진입"하고 또 "2006년에는 기본적으로 전력수급 균형을 이룰 것"으로 발표함

. 이는 11.5계획기간(2006~2010년)의 중국내 전력사용 증가율을 6%로 추산할 경우, 2006년에는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은 균형상태를 보이고 2007년부터는 과잉공급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나옴

. 이러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2003~2010년간 총 46,446억위앤을 투자하여 총 45,217만㎾, 연평균 5,490만㎾에 해당하는 신규 설비 투자에 나설 예정

. 또 2010~2020년간 총 90,550억위앤을 투자하여 총 8,775만㎾, 연평균 7,546만㎾ 상당의 신규 설비를 건설할 예정임

-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공급 부족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는 전망을 내놓음

- 결국 중국의 전력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요 제한, 중기적으로는 전원(電源) 개발이 과제가 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안정공급을 위한 전원(電源) 구성의 적정화 등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함

- 이는 향후 중국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만약 전력부족이 수 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 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거시적으로 보면 현지 투자 한국기업에 그치지 않고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대상국으로 전력부족에 따라 중국의 실질 GDP가 저하할 경우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임

나. 개발구 정리정돈 정책,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

□ 무허가 개발구 정리 정책 배경 및 현황

- 2002년 개최된 제16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 확대문제에 발단이 된 삼농문제(三農問題)[4]를 온쟈바오(溫家寶)총리가 강하게 제기하면서 난개발된 개발구의 취소와 농지에의 복원 방침이 정해짐

-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중국 정부의 무단 설립 개발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고 2004년 4월 29일 국토자원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토지시장 정리정돈, 토지관리 가일층 강화에 관한 긴급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더욱 더 활기를 띠게 됨

. 관련 통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개발구는 국가급 개발구와 성 및 상하이시 등 직할시가 인가하는 성급 개발구의 2종류에 한함

. 직할시 이외의 시, 현, 구, 진 등이 독자적으로 조성하는 개발구는 위법 처리됨

. 또한 성정부의 허가를 얻었지만 장기간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개발구나 정리 조정기간 중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개발구 또한 국무원이 개발구 설립에 제동을 건 이후(2003년 7월 18일 이후) 설립된 개발구 등도 정리정돈의 대상이 되고 있음

4) 삼농이라는 것은 농촌문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줄인 것으로 중국의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과제임.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간의 도시와 동부에 편중된 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삼농문제를 야기시키는 계기가 됐음

-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개발구에 대한 정리 방침은 그동안 각 지방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난(亂) 개발구를 조성한 것에 대한 일침을 가하기 위한 것임

- 여기에는 지방정부가 개발구 조성을 위해 농지를 마음대로 공업용지로 전용하는 등 월권행위로 인해 ▲ 대량의 경지 점용에 따른 식량생산 능력에 대한 영향 ▲ 농민의 불만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 ▲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부패 온상화 ▲ 중앙 권위의 약체화라는 폐해 등도 중앙 정부의 개발구 정리에 힘을 실어줌

<토지 정리정돈 관련 주요 통지>

공표일시	통 지 명	내 용
‘03. 7.18.	각종 개발구의 인가 잠정 정지에 관한 긴급통지(국무원 판공실)	각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 관계부문은 개발구의 신설이나 확장을 잠정정으로 정지함. 국가급 개발구를 확장하는 경우는 국무원의 심사, 인가가 필요함
‘03. 7.30	각종 개발구 정리정돈, 건설용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국무원 판공실)	각급 인민정부 및 관계부문이 인가, 설립한 개발구를 철저히 조사함. 건설요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프로젝트 내용이 미확정된 것도 정지됨
‘03. 9. 2	각종개발구의 기획·건설관리 강화, 규범화에 관한 통지(건설부)	2003년말까지 개발구 통폐합을 실시. ‘건설용지기획허가증’이나 ‘건설공정기획허가증’을 미취득한 채, 프로젝트를 실시할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됨
‘03. 11.3	토지·시장질서의 관리·정돈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국무원)	시, 현 인민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준에 따라 재검증함. 검증기관중에는 잠정적으로 건설용지의 신청 수리나 토지의 할당 발행을 정지함
'03. 12.30	각종 개발구 정리정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정책의 경계선에 관한 통지(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토자원부)	성급 이하의 개발구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통폐합의 대상이 됨. 국가급 또는 성급에서도 인가 구획 이외의 토지는 위법대상이 됨. 현급이하의 개발구는 일률적으로 폐지됨
‘04. 02.19	엄격하게 기준과 정책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현 개발구를 정리 정돈한다는 공문(국토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발송	국토자원부 및 관련기관이 파견한 전문팀이 심사를 실시하여 불합격한 경우 정리대상이 됨. 국가급 및 성급개발구 이외는 건설용지의 심사인가를 일시 정지함
‘04. 4.29	토지시장 정리정돈·토지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국무원 판공실)	건설용지의 심사 인가를 엄격화. 정리정돈의 기간중에는 전국적으로 농지에서 비농업건설 용지로의 전환에 대한 심사인가를 잠정적으로 정지함
‘04. 6.8	토지시장의 정리정돈. 엄격한 건설용지 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국토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 교통, 수리, 도시 인프라, 위생, 교육 등 7개의 중점분야 등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용지의 인가수속을 가능토록 함

자료원 : 일본 ヅェトロセンサ—(2004년 12월)

□ 개발구별 정리·정돈 조치 내용

【국가급 개발구 : 국무원이 설립을 비준한 개발구】
-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토지를 확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것이 토지 관리 법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에 기초해 점유 토지를 회수함 - 토지 확대 필요가 인정될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에 허가 신청을 함 - 국무원 소속 부처가 국무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립한 각종 개발구는 모두 폐지하고 상응한 성급 정부가 성급 이하의 '개발구의 정리와 개선 지침'에 따라 정리·개선함
【성급 개발구 : 성 정부가 설립을 비준한 개발구】
- 배치가 합리적이지 않고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토지의 점용이 지나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보이는 개발구에 대해 정리·통합키로 조치함 - 토지개발·기업 유치를 지연하고 있는 개발구를 취소하고 점용한 토지는 법에 따라 회수함 - 성급개발구에서 성급정부의 비준을 얻지 않고 확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것이 토지관리의 법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를 통해 취소하고 점용된 토지는 법에 기초 회수함 - 확대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성급 정부에 허가 신청을 함 - 성급 정부의 소속부처가 성급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준·설립한 각종 개발구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취소하고 성급 정부가 성급 이하의 개발구 정리 기준에 맞춰 정리·개선함
【성급 이하 개발구 : 성급 이하의 각 급 정부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개발구】
- 성급 이하의 개발구는 성급 정부가 정리(취소, 삭감, 통합)함 - 현급 이하의 정부가 비준, 설립한 각종 개발구는 모두 취소함 - 개발구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용의 부지는 도시 전체 계획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관리함 - 도시 전체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용된 토지는 회수함 - 지급(地級)정부와 국무원·성급정부의 소속부문이 비준 설립한 기타 개발구는 통합안을 제출해야 함 - 정리 통합후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발구에 대해서는 성급 정부가 '정리·통합'의 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한 후 다시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무원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함

□ 불법 조성 개발구 단속 현황

- 국토자원부의 2003년 11월 28일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134개소의 무허가·무등록의 개발구가 적발되어 5,658개의 개발구 가운데 실제 2,064개소를 통폐합시킴

- 또 2004년 2월 국토자원부 등 국무원 5개 부서가 공동으로 전국 각지의 개발구를 조사한 결과 저쟝성, 광둥성 등 남부 연해지역의 소규모 개발구 난립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지역의 개발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저쟝성의 경우 전체 758개의 개발구중 82%에 달하는 624개(2004년 4월 기준), 광둥성의 경우 전체 499개중 80%에 달하는 397개(2004년 7월 기준)가 철거 판정을 받음

. 랴오닝성의 경우 2004년 7월 현재 총 162개 개발구 중 절반인 82개가 이미 철거됐는데 랴오닝성 국토자원청은 조사 결과에 의거, 장기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개발구 3,100만 헥타를 강제 회수하고 35만㎡에 달하는 법규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는 한편, 18명의 관련자를 고발한 바 있음

. 이 밖에 헤이롱쟝성 하얼빈시의 경우 총 41개 개발구 중 58%인 24개가 철거됐는데 대상 대부분이 鄕, 鎭 개발구로 나타났음

. 또 장쑤성 창저우(江蘇省 常州)시에서는 개발구 설치를 위해 6,500畝(약 4.8㎢)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 개발한 것이 드러나고 있음

□ 토지관련법에 대한 이해 필요

- 이와 같은 개발구 입주에 따른 문제는 외자계기업들이 '회사설립 →토지사용권 구입 →공장건설'이라고 하는 토지사용권 구입에 따른 정상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설립→공장건설→토지사용권 구입' 등 비합법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는데 있음

- 개발구가 일반적으로 농지를 공업용지로 형질을 변경할 때는 관례적으로 일정 이상의 면적분(복수의 프로젝트 분)을 모아서 성, 시급 정부의 토지관리당국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이 때문에 다수의 개발 프로젝트 계획안을 접수하면 성·시급 토지관리당국이 심사를 제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허가 지연으로 당초 계획대로 공장건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공장건설 지연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개발구측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장건설 후에 토지사용권을 구입하는 편법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의 소지를 낳고 있음

. 문제는 개발구측에서 이러한 토지취득 수속관련 정보를 해당기업 측에 통지하지 않아, 투자기업은 문제가 발생된 후에 수속상의 허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와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속 자체를 개발구에다 일임시키지 말고 진출기업이 사전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함

- 한편, 중국에서 '토지는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그 사용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해서 행사하는 (토지관리법 제2조)'것으로 되어 있어 토지사용권 구입자와 국토자원부(지방정부에서는 '局')가 직접 계약해야만 유효한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음

. 그러나 외자계기업 중에는 각 지역의 개발구가 토지사용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개발구와 '토지사용권 구입 협의서'를 체결하면 토지사용권을 구

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음

. 게다가 대부분의 개발구가 진출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일련의 수속을 대행하고 진출기업은 토지사용권 구입에 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채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외자계기업이 정식으로 토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자원국과의 '국토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동 계약 체결후 계약서에 명시된 구입액을 납부하고 대략 2~3개월 정도 지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유토지사용권증'을 국토자원국이 교부해 줌

. '국유토지사용권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사용권 양도등기신청서 ② 수속인의 신분증명서 ③ 국토자원국과의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 ④ 개발구와의 인프라 정비 하청계약서 ⑤ 토지측량보고서 ⑥ 소관심사기관의 외자계기업 인허가서(외자계기업의 경우) ⑦ 국토자원국이 발행한 용지 양도에 관한 인가문서 ⑧ 국토자원국이 확인한 지적도 등이 필요함

- 또한 공장건설을 위해서는 '국유토지사용권증'을 취득한 후 '건설용지기획허가증', '건설공정기획허가증', '건축공정시공허가증'이 필요하지만 이는 '국유토지사용권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것으로 외자계기업들은 공장 착공시점이 돼서야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이렇게 법 제도를 무시하고 외자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개발구의 책임도 있지만 투자에 급급한 나머지 법령 준수 기본규정(Compliance Porgram)을 무시한 기업측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

□ 토지 징용에 대한 대처 방안은?

- 이러한 난개발을 둘러싼 문제와는 별도로 외자계기업이 유효한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도시계획이나 개발구 확장 등을 이유로 해당시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징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최근 장쑤성에 진출한 모 외국기업은 정식 수속 절차를 거쳐 구입한 자사 용지에 공장 증축을 신청했으나 시 정부로부터 거절 당함.

. 지방정부의 위임을 받은 개발공사가 선진산업 유치의 대형 프로젝트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기존 공장을 철거할 것을 요청함

. 최근에는 공장 앞의 도로 확장공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보상조건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함

- 실제 타당성연구 보고서(FS)부터 토지취득, 공장건설까지 현지 투자기업의 담당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식 토지사용권을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출한 지 3년만에 시정부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음

- 지방정부가 정식 수속을 거쳐 토지 징용에 대해 인가를 받은 경우, 또 그 목적이 공공 이익에 부합한 경우, 유효한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진출기업이라 할 지라도 정부의 토지징용을 거절할 수 없음.

. 즉 토지관리법 제58조 제1항에서 지방정부가 징용 토지를 상업목적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적법한 허가 절차없이 징용할 경우 투자기업이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외자계기업이 이런 전후 사정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음

- 만약 토지를 징용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철거조례 제22조, 제28조)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규정이 없고 기업측으로서도 철거에 응한 후의 공장 재건 등 또 다른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 하는 등 기존 기업 이미지 재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 한편, 장쑤성 거주 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의 규정이나 사법해석(행정배상안건의 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둘러싼 쟁의에 대해서는 기업은 행정불복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음

. 결국 합법적인 토지사용권을 지방정부로부터 징용당했을 경우, 최종적

으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 외에 현재까지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황임

- 이런 경우도 일련의 '정리정돈'과 무관하지 않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이 진행되는 중국에서 향후 토지관련 문제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토지문제에 관한 합법성 조사와 법령 준수는 향후 중국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부문에 위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불투명한 세제 리스크

【증치세 제도의 변경】

□ 증치세 환급제도의 수시 변경

- 1994년의 세제개혁에 따라 유통단계 세제인 공상통일세(工商統一稅)가 폐지되고 화물관련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서비스에 관한 영업세가 신설됨

  . 그러나 10여 년간 시행해 온 증치세관련,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은연중 중국 진출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음

□ 불환급액의 산출방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 특히 수출증치세의 환급제도는 중국의 경제 정세, 환급재원, 수출정책, 징세관리 등, 수시 변경으로 외자계기업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외자계기업이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 국내에서 원자재 구입시 지불했던 증치세(기본세율 17%)를 환급받고 있음

  . 그러나 품목에 따라 환급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액이 환급되는 것이 아님. 현재의 불환급세율은 평균 3%임. 이는 과거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산출방식으로 인해 수출기업에 대해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부담케 함

. 즉, 수출판매가격(FOB가격)에 불환급율을 곱하는 계산식으로 인해 매입액과 자사에 의한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불환급분이 발생하여 이것이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음. 즉,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부담이 큼

- 진료가공기업(進料加工企業 :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재료만을 사용해서 가공 수출할 경우 증치세 거래 내역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상기 계산식으로 인해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부분에도 불환급부분이 발생함

- 중국 정부는 매입시 납부한 증치세액에 기초한 불환급액의 계산으로는 수출관련 부분의 매입 증치세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부정 및 조작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FOB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수출증치세 환급액 인하의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또 2004년부터 일정액을 초과하는 증치세 환급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수비율(75%:25%)에 대해 부담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부담분은 지방정부의 재정생태에 따라 환급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함

. 또 증치세의 징수액과 환급의 발생장소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세수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되는 지방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와 같이 현행의 불투명한 수출증치세의 환급 정책은 앞으로도 변동 가능성이 높아 그 향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간접수출에서 증치세 부담

- 간접수출(재료를 수입해서 1차 가공하고, 이를 다른 회사가 2차 가공해서 수출하는 거래)의 경우 1차 가공회사에서 2차 가공회사로의 판매는

국내거래로 간주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함

. FOB 가격을 기준으로 불환급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2차 가공회사인 수출회사는 1차 가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분에 대해서 부담하게 됨

- 이에 따라 기업측은 1차 가공회사, 2차 가공회사간의 증치세의 불환급부분을 지분에 따라 분담하든가, 2차 가공회사가 1차 가공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해서 수출하거나 혹은 1차 가공회사가 일단 홍콩 등으로 수출하고, 2차 가공회사가 재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하는 등 형태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유통기업의 소규모 납세자 기준' 부문의 문제점

- 2004년 4월 '외국인투자 유통부문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分野管理辦法)'이 공표되어 2004년 6월부터 외자기업은 도·소매업 부문의 유통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독자에 의한 설립은 2004년 12월 11일 이후 개방)

- 이와 관련, 국가세무총국은 긴급통지를 발표하여 특정 규모 이하의 유통기업에 대해 1년간 매출액이 180만위앤에 달할 때까지 소규모 납세자로서 인정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중국 유통기업으로서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회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납세자로서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많아짐

-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관한 증치세율은 4%로 일반 납세자(17%)보다 낮지만 매출액에 따른 증치세의 전용 영수증(납세자의 공제세액 산출시 필요)을 발행할 수 없음

. 이 때문에 구입자는 매입 증치세의 공제가 불가능하며 규정에는 세무국에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세무국이 영수증을 대리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제대로 발급할 수 있는지는 그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상황을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또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의 전용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 증치세액을 매출 증치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에 관한 증치세액을 직접 비용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규모 납세자 유통기업들이 판매가격 설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진율 감소에도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유통기업 설립 규제의 완화로 중국 유통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상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국 유통업 부문 진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증치세 개정 방향

- 현재 중국 세무국에서는 화물에는 증치세(17%), 서비스에는 영업세(3~20%)를 부과하고 있지만 구분이 모호하여 취급이 애매한 업태(예를 들면 소프트 산업)에서는 ▲증치세·영업세의 혼합 거래 적용 ▲증치세, 영업세 세율차이에 따른 불공평함 ▲적용 세제에 따른 징세방식의 복잡성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증치세로의 통합'를 검토하고 있음

. 조기 통합 시행은 어렵지만 2006년부터 건축업, 운송업 등 일부 업종부터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일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또한 고정자산 구입 관련 증치세는 고정자산의 원가에 산입되어 매상증치세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동북 3성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범적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5) 중국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동북 3성 소재 8개 업종 기업에 대해 소비형 증치세 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함. 소비형 증치세는 생산형 증치세와 달리 고정자산 등 자본재 투입액 전액을 공제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설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8개 업종으로는 설비제조업, 석유화공업, 야금업, 선박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농산품 가공업, 군수산업, 하이테크산업 등

. 2006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측돼지만 향후 세수 사정 등에 따라 장려업종으로 한정될 가능성도 있음

【이전가격조사】

□ 외자계 기업, 이전가격 조사의 중점 타킷

- 중국이 1991년 공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 세칙'에는 이전가격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음

. 이에 기초해 중국 세무당국은 1990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전(深圳)지역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 조사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1998년에 잇달아 '이전가격에 관한 통지'를 잇달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시작함

- 우리 기업들은 구미 기업과 비교할 때 중국 현지법인을 가공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즉 원자재 등을 한국 모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중국에서 가공한 제품을 모회사로 수출하는 계열사간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한국의 모 회사와 중국 현지 파견자는 현지 투자기업을 모 회사의 자회사로 인식하고 모 회사에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래가격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설립시의 설비구입, 기술지도료, 가동후의 원자재·부품구입, 로얄티, 자금차입, 모회사에 대한 제품 판매 등 광범위한 거래가 이전가격과 관련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중국의 세무당국이 주시하고 있어 향후 한국 진출기

업이 이전가격 조사의 중점 타킷이 될 수도 있음

- 세무당국이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에는 ▲관련기업과의 거래규모가 큰 경우 ▲설립후 2~3년이 지나서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 ▲이익발생 미미함 또는 손실 등의 이유로 증자를 통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기업 ▲이익과 손실을 교대로 반복하고 있는 기업 ▲2면 3감(이익 계상 후 2년간 면세와 3년 간 절반 감면을 누릴 수 있는 우대조치)후에 손실을 계상하고 있는 기업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은 모회사의 협력하에 가격설정 방침과 설정 과정의 명확화,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격설정 자료의 정비 등에 따라 세무조사에 들어갔을 경우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04년 6월에 '조세 회피 방지 업무에 관한 가일층 강화에 관한 통지'가 공포되어 세무당국에 의한 이전가격 조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자우대세제의 폐지 가능성】

□ 기업소득세 통일화 예상

- 1991년 7월 1일부로 시행해 오고 있는 현행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그 실시세칙'에는 외자계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상기법을 시행한 지 10 여 년이 지난 현재 중국정부의 기대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액이 증가했고, 한편 기업소득세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중국 내자기업의 불평을 야기해 왔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내외자계기업의 기업소득세가 통일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이에 따라 200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업소득세 통일화 방안이 채택되어 2006년 1월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망함

□ 기업소득세율 개정 예상

- 현재 기업소득세의 일반세율은 33%이지만 실제 평균 부담률은 외자계 기업이 11% 정도, 내자계기업이 22% 정도임

. 기업소득세율을 개정할 경우 주변 국가들의 세율을 참고하여 24~28% 사이의 세율로 설정할 예정임

□ 우대세제의 폐지 가능성 증폭

- 외자계기업에 대한 우대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모두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장려분야 또는 특정업종, 지역 등에서의 일부 우대세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의 생산성기업의 2면 3감(二免三減 ; 이익발생 시점부터 2년 면세, 3년간 절반 감면)과 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서부지역 등 지역에 따라 세율우대, 수출형기업에 대한 세율 감면 적용기간 연장, 하이테크기업의 기술개발비를 과세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등 각종 우대정책의 어떤 부분을 폐지할건지 또는 계속 실시할 것인지가 불투명함

- 이에 따라 새로운 세제 적용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유력한 소식통에 따르면 신 세제는 2006년 이후 설립 예정 기업에 적용되며 2005년 이전 설립 회사에는 당분간은 현행 세제가 적용될 것을 예상됨

. 만약 기존기업에도 신 세제가 적용될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또한 외자계기업에 대한 우대세제가 폐지된다면 현지법인의 이

익, 배당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회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

라. 법률 운용상 문제

【법제도 미정비에 따른 리스크 발생】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각종 법제도를 급속도로 정비하고 있지만 그 운영 및 행정상의 처리 미숙함으로 인해 중국 진출 외자계기업 대부분이 법적용에 있어 난관에 부딪치고 있음

- 특히 무역 절차나 관세율 적용, 투자관련 제도 등은 기업 수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관련 정보 파악을 통한 대응책 마련 필요

- KOTRA가 2004년 8월 한·중 수교 12주년을 맞아 실시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서 중국 진출기업들의 실패 원인으로는 법제도 환경 미숙(17.0%)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법제환경 미비로 인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업이 꼽는 주요 실패요인 : ▲파트너 선정 오류(19.3%) ▲법제도 환경 미숙(17.0%) ▲외상거래로 인한 자금난(13.3%) ▲중국 업체의 추격(12.6%) ▲유통망 부재(11.1%)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제도 환경 미숙'의 비율(18.4%)이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일본 JETRO가 2003년 3월에 실시한 '중국 투자환경 평가에 관한 조사'에서도 일본기업들이 중국 진출시 직면하는 문제로 ▲법령의 미비·불투명성(18.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운용의 불통일성(16.4%) ▲세법 미비·투명성(14.9%) ▲관세율(10.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일본 JETRO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상위 4번째까지가 모두 각종 법 제도와 그 운용상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행정수속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에는 각종 법제도가 급속히 정비되고 있지만 '실시세칙' 등 구체적인 법안 제정 지연과 지방정부의 법령 운용이 자의적인 부분이 많은 등 투명성과 통일성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됨

【관세율 미통일화에 따른 손실 발생】

□ 관세율 코드 적용 방법에 따라 관세율 상이

- HS코드는 관세율 산정의 관건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HS 코드 적용방법에 따라 기업의 관세납부액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세계 각국에 부품을 수출한 적이 있는 모 기업은 중국도 미국과 유럽 등과 똑같은 HS 코드를 적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납부액을 산출함

  . 그러나 상품에 대한 HS 코드의 마지막 3자리가 애매하게 구분되는 바람에 관세율이 예상치보다 3배가 부과됐음. 이에 항변했으나 결국 납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

  . 또 동일 제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의 직원에 따라 HS 코드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이 조립형의 상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일이 HS 코드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수 없고 항변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과세권은 해당 수입국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숱하게 많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에 사전 확인을 하고 대상 상품의 HS코드를 확실히 파악하여 관세율이 몇 %인지 문서로 확인받는 등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중국의 국제표준검사제의 함정】

□ 중국의 각종 검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중국 진출 외자계기업중 반도체 등의 정밀전자부품 관련공장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유해가스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러한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공장 건설시 엄격한 각종 검사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일본의 모 화학액체 제조업체는 국제표준규격과 기준에 기초하여 신설공장의 설계를 완료하고 국토자원국, 소방국, 공안국 등의 허가를 받은 후 공장을 건설함

. 이후 안전생산감독관리국에 제품 생산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방폭검사(防爆檢査)[6] 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추가 공사에 돌입하게 됨

. 이 기업은 국제표준규격, 기준을 근거로 항변했지만 현지 지방정부는 중국의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함

. 결국 추가 공사를 하게 되어 약 2,000만엔의 추가 경비를 지불하게 됐음

- 또 일본의 모 정밀기기업체는 현지 공장 건설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일본 본사로부터 구입함. 이 장비는 국제표준규격에 부합한 제품으로 해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장비였으나 중국 관련기관은 자국의 규격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의 지정 검사기관에서 재 검사를 받도록 요구함

. 이 때문에 동 사는 예기치 못한 시간과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손해를 크게 입었음

- 결국 이러한 문제는 각종 제도 및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심

6) 방폭검사란 공장의 방벽이 일정한 강도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으로 위험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필수 검사 항목임

사 절차부분도 애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만약 기업측이 사전에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적어도 중국계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실시세칙 미발표로 정확한 기준 부재】

- 2004년 12월 11일 부로 발효된 '외국인투자 유통부문관리방법'(이하 방법)은 외자계 기업에 대한 도소매업의 개방 관련 법률로 중국 국내외 기업의 주목을 끌고 있음

- 그러나 외자계 독자기업의 최저등록자본금이 동 '방법'에서는 기본법인 회사법에 준하여 소매업은 30만위앤, 도매업은 50만위앤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법률의 '실시세칙'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동 법률이 과연 실효성을 갖춘 법률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되고 있음

. 소식통에 의하면 '실시세칙'이 공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만약 실시세칙 등 운용 방법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행정 재량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즉, '실시세칙'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하의 법제도에서는 지방정부의 의도가 작용하여 적절한 행정 수속이 없을 경우도 우려됨

. 지금까지 중국 투자기업들 대다수가 이러한 각종 법 제도에 관한 운용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대부분이 지방정부와의 타협을 통해 해결해 온 것이 사실임

. 한편, 향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법제화에 따라 지금 이상으로 난해한 행정수속이나 갑작스런 제도 개정 등이 증가하여 예기치 못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마. 대금회수 지연 심각화

-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외자계기업의 대중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 내수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2004년 4월에는 '외국인투자유통부문관리방법' 이 공표됨.
  . 또 WTO 가입 약정안에 따라 2004년 12월 11일부터 외국인독자기업에 대한 도·소매업의 개방폭이 확대되고 있음
  => WTO 가입 1년 : 외자 소수지분의 회사 설립을 인가
  => WTO 가입 2년 : 외자 다수지분의 회사 설립을 인가
  => WTO 가입 3년 : 독자기업의 설립을 인가

- 지금까지 중국 진출 외자계 기업들은 중국 현지의 저렴한 임금을 이용한 수출 목적의 가공무역에 주로 종사해 왔음

-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의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 소비 확대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중국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진출 대형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반 소비자 대상의 판매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중간재를 취급하는 중소형기업의 대부분은 중국내의 외자계기업 또는 중국 국내기업과의 신규 거래를 늘리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중국에서는 하청 거래에 관한 발주기준이나 지불 조건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중국비즈니스 관행에 의한 할인판매 요구나 대금 미지불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어 내수거래는 반드시 순조롭다고는 할 수 없음

□ 내수거래의 최대 문제점

- 우리기업의 중국내에서의 상거래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중국의 정책, 제도, 상관습에 직면하여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음. 대표적으로 대금회수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음

  . KOTRA가 2004년 8월 한·중 수교 12주년을 맞아 실시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영실태'에서 중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5위가 대금 회수를 들고 있는데, 향후 중국 내수시장 진입이 활발해 짐에 따라 대금 회수 관련 분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중국 비즈니스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 현지 상관습(182)
- 통관 및 세무(124)
- 법적 제도적 환경 미비(119)
- 언어장벽(92)
- 대금 회수(74)
- 고급인재 부족(69)
- 교통 및 통신 등 인프라 미비(42)
- 인맥 관리(41)
-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가짜상품 난무(39)
- 본사(모기업)의 중국시장 이해 부족(39)
- 높은 물류비용(36)
- 유통망 확보 어려움(33)
- 에너지난(27)
- 원자재 난(23)
- 자금조달(20)
- 과실송금(17)
- 중국 내 업체간 담합(17)
- 현지 지방정부와의 불화(16)
- 기타(10)

자료원 : KOTRA, 중국 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발췌(1,020개 복수 응답)

<일본기업의 중국 국내 판매활동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 일본 JETRO,가 2002년 8월에 발표한 '일본기업의 중국 국내 판매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문회사 기업(178개사)의 75.3%가 '외상대금의 회수'를 국내 판매활동시의 최대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모방품의 범람'(25.3%) 등이 다른 항목에 비해 앞서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상대금 중 지연 금액의 점유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 또 '10% 이상'은 40% 이상에 달하고 그 중 '20% 이상'의 기업은 전체의 19%에 달하고 있음

. 회수불능 금액이 지연금액에 점하는 비율이 '5%'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14%를 점하고 그 중에는 '7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있었음

- 따라서 대금회수는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 특히 사태가 심각한 것이 중간재 거래임. 중간재를 취급하는 기업의 외상대금에 점하는 지연금액의 비율이 '10%'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50%에 달하고 지연액의 비율 및 지연기간은 일반소비재를 취급하는 기업보다도 훨씬 높았음

. 지연액중 회수불능금액의 비율은 '5% 미만'이 전체의 86%를 점하고 '5%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은 일반소비재의 취급기업과 비교하면 적음

. 이는 산업재인 중간재의 경우 지불 연체됐을 경우, 관련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것과 일반소비재와는 달리 일본을 비롯한 외자계기업과의 거래가 많기 때문임

. 기계, 설비 판매시는 대리점에다 대금회수 리스크를 전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그러나 동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경쟁력이나 브랜드 파워를 갖춰야 함

- 동 설문조사에 응답한 일반 소비재 기업 35개사의 내수판매 대금회수 상황을 보면 회수 형태는 '외상'이 69%를 차지하고 외상대금에 점하는 지연액의 비율이 '10% 이상'의 기업은 29%였음.

. 지불연체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으로 응답기업이 25%에 달하고 지연 내용은 '미지불'이나 '수표 부도'가 89%를 점함

. 지연액중 회수불능금액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응답 기업이 많지만 5% 이상 50% 미만이 미회수 기업은 4개사에 1개사 꼴로 높음

- 특이할만 것은 '고객의 자본운용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76%)로 대답한 기업이 많다는 것임.

. 지연 배경은 '고객의 자본운용'이 40%, '재무전략'이 28%, '상관습'이 32%로 되어 있음

. 회수불능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고객의 자본 국적은 중국 국유 내지 민영기업이 많고 그 배경은 '자금운용', '재무전략'임.

. 지불지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중국민영기업'이 45%로 여기에다 중국 국유기업, 홍콩, 대만기업을 합하면 74%까지 이름

. 일반소비재는 도매, 양판점,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지만 대형식품 업체도 중국 민영기업으로부터의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원 : 일본 ヅェトロセンサー(2004년 12월)

<외상대금에 점하는 지불 연체액의 비율>

(단위: 기업수, %)

	일반소비재	중간재
10% 미만	22(71%)	60(50%)
10% 이상 20% 미만	5(16%)	29(24%)
20% 이상 40% 미만	3(10%)	19(16%)
40% 이상 60% 미만	0(0%)	5(4%)
60% 이상 80% 미만	1(3%)	4(3%)
80% 이상	31(100%)	120(100%)

자료 : 중국진출일본기업의 대금회수문제에 관한 실태조사(JETRO)

<외상대금의 지불 연체기간>

(단위: 기업수, %)

	일반소비재	중간재
2주간 미만	8(29%)	17(15%)
2주간 이상 1개월 미만	7(25%)	26(23%)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6(21%)	48(43%)
3개월 이상 반년 미만	4(14%)	8(7%)
반년 이상 1년 미만	2(7%)	8(7%)
1년 이상	1(4%)	4(4%)
합계	28(100%)	111(100%)

<판매처 내역>

(단위: 기업수, %)

	일반소비재	중간재
국유기업	4(13%)	23(11%)
민영기업	14(45%)	68(31%)
대만계기업	4(13%)	27(12%)
홍콩계기업 미만	1(3%)	8(4%)
한국계기업	0(0%)	9(4%)
일본계기업	7(23%)	65(30%)
구미계기업	0(%)	16(7%)
기타	1(3%)	2(1%)
합계	31(100%)	218(100%)

자료 : 상동

4.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을 기점으로 우리기업의 중국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2002년에 중국은 우리의 제1투자대상국으로 부상, 2004년 현재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의 대중 투자는 중국의 저렴한 지가, 저가의 풍부한 노동력, 방대한 자원, 공장건설 소요기간 단축, 정비된 인프라, 조세우대 정책 등 이점을 보고 중국 진출을 해 온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상기 요소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현재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또 리스크도 표면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투자시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향후 예측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 전력난 발생 대비를 위한 사전 대응책 강구 요망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의 전력난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전력수급과 관련된 해당 지방정부의 정책과 조치 등을 사전 파악 필요

. 해당 시정부의 초상국(招商局)에 개발구의 전력공급능력을 확인할 것
. 전력공급이 심각할 경우를 대비, 전력공급보호책을 서면으로 확인해 놓을 것
. 비상시를 대비해 자가발전의 설비투자를 타당성보고서(F/S)에 포함시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또 전력사용 피크 기간을 피해 생산시기를 조절하는 생산계획 변경 가능성도 고려 필요. 즉 전력공급이 원활한 시간대에 맞춰 조업시간 조정 필요

□ 개발구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 중국 국토자원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4년 4월 29일 부 '토지시장 정리정돈·엄격한 토지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 발표를 계기로 향후 지방정부가 무단 조성한 불법 개발구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예정

- 보통 개발구 입주에 따른 문제는 외자계기업들이 '회사설립 ⇒ 토지사용권 구입 ⇒ 공장건설' 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개발구에 일임하여 '회사설립 ⇒ 공장건설 ⇒ 토지사용권 구입 등 비합법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 있음

- 이와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속 자체를 개발구에 일임시키지 말고 진출기업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진출한 기업들은 다시 한번 해당 정부기관에 토지사용권 계속 사용에 대한 보증을 받아 놓을 것

- 또 진출 예정지를 결정할 때는 ▲ 진출 예정의 토지가 집단소유제의 토지가 아닐 것 ▲ 도시계획에 기초한 도로건설계획이나 녹화계획이 최소 5년간은 잡혀 있지 않을 것 ▲ 건설된 공장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설계도면·건축사양서 제공, 사양서 스펙 내용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함

- 만약, 합법적으로 불하를 받은 토지사용권에 대해 현지 지방정부가 징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함.

- 한편, 2004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발구의 정리·통합 움직임은 개발구 그 자체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개발구가 제공하고 있는 우대조치(주로 세제우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사를 할 예정[7]에 있어 세제우대책을 보고 개발구에 입주할려고 하는 투자기업들은 개발구별로 우대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7) 관련 법령으로는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國稅發【2004】9號,,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관련 문제에 관한 감독계획(國稅函【2004】349號)이 있음

- 관련법령은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國稅發【2004】9號' 와 '개발구의 세수우대정책의 정돈과 검사관련 문제에 관한 감독계획(國稅函【2004】349號'에 두고 있음
  . 상기 통지에 따르면 개발구를 '국가급', '성급', '성급 이하'의 3종류로 분류하여 각 개발구가 과도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한다는 것임

□ 중국 세제관련 정확한 정보 입수 요망

- 증치세의 환급제도의 수시 변경에 따른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의 사전 방지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위해 정확한 세제관련 지식 획득 요망

- 최근 중국정부가 외자계기업의 이전가격 조사를 본격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세무당국의 조사 중점대상기업의 종류를 파악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 설정 방침과 설정과정의 명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항상 준비하여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것이 요망됨

- 또 향후 외자계기업에 대한 우대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제 개정추이를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법제도 파악을 통한 리스크 방지

- 중국이 WTO 가입 후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서는 '실시세칙' 미발표로,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해당 지방정부의 서면 확인을 받아 놓는 것도 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음

- 또 국제기준과 다른 중국의 각종 검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를 통해 현지 비용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대금회수지연 발생 사전 대응책 마련 필요

- 조속히 중국 전문 변호사 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 대금회수의 기본전략의 수립, 상품의 차압이나 소송, 중재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신규 계약과 출하를 정지할 것
. 상대방에게 최신 재무제표와 결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 상대방(채무자)에 전화를 걸거나 서신 발송을 통해 독촉하도록 함
. 채권회수방법에 대한 교섭 시작할 것
. 서신으로 외상대금 존재를 수시로 확인을 해 줄 것
. 상대방에게 소관 감독관리기관에 미회수대금 내역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
. 상대방에게 법적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
. 상대방의 관할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것
. 변호사에 의뢰해서 기한부 독촉문서를 발송하도록 할 것
. 상대방으로부터 회신 문서를 접수했으면 공증을 받아 증빙으로 삼을 것
. 주기적인 상대방의 상황 파악과 정기적 방문을 통하여 대금미지급 변명 여지를 주지 말 것
. 보증인에 대한 문서통지와 반년마다 대금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잊지 말 것
. 조정, 중재(위법성이 있는 경우는 고소할 것)를 신청해서 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것. <끝>